

「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」 대상모집

「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」 대상시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자동측정망 설치를 희망하시는 시설 소유자(관리자)는 2025.05.19.(월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I 사업목적

-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 공기질의 상시 측정이 가능한 자동측정망을 구축하고자 대상 공모

※ 관련근거 :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4조의6(측정망 설치)

I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구축
- 사업기간 : 측정기기 설치 후 철거 시까지
- 사업대상 : 전국 특·광역시 「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3조(적용대상) 다중이용 시설 9개 시설군 중 12개 시설
- 사업내용 :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

III 신청자격

- 「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2조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해당 시설
 -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
 -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
 -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
 - 모든 대규모점포
 -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(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)
 - 모든 영화상영관(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)
 -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
 -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(옥내시설로 한정한다)
 -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

IV 신청안내

- 신청기간 : '25.03.26.(화)~'25.05.19.(월)까지
 - ※ 대상선정 결과 개별통보
- 신청방법
 - (방법1)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(inair62@keco.or.kr)로 제출
 - (방법2) 인터넷 네이버 폼 활용(QR 코드 및 URL)

V 참고사항

- 자동측정망 설치시설 담당자 등
 - 실내공기질 자가측정(약 80만원 상당) 및 교육 의무 면제
 - 측정장비 설치를 위한 적정 지점 제공 협조
 - 필요시 측정장비 외함에 시설 홍보 이미지 파일 제공
- 한국환경공단
 - 측정장비 설치·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
 - 측정장비 정도관리를 위한 방문(월 2회)
- 문의처 : 한국환경공단(032-590-3552)

- 붙임 1.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신청서 1부
2.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개요 1부. 끝

붙임1

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신청서

<(방법1)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inair62@keco.or.kr로 제출>

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인	시 설 명		
	담 당 자		
	주 소 (전화번호: 이메일:)		
시설용도	☐ 지하도상가 ☐ 박물관 미술관 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☐ 대규모점포 ☐ 장례식장 ☐ 영화상영관 ☐ 학원 ☐ 전시시설 ☐ PC방		
일반현황	연면적(m ²)	준공연도	개소연도
	건물의 총 층수/사용층		
	시설현황(각 층별)		
	환기 방식	☐ 자연환기 ☐ 기계환기	
	일일 이용객수(명)	일최대: 일평균:	거주자수(상근자 포함)

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(동의함 ☐, 동의하지 않음 ☐)

- 목적 :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
- 수집 및 이용항목 : 성명, 소속, 주소, 이메일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시설정보
- 보유기간 : 수집/이용목적 달성시까지
-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: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 컨설팅 참가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위와 같이 환경부「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」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 분야

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(무료)

평가 항목	항 목		분 류	체 크
시설개요	시설 유형		지하도상가	
			박물관 및 미술관	
			실내어린이놀이시설	
			대규모점포	
			장례식장	
			영화상영관	
			학원	
			전시시설	
			PC방	
	연면적(m ²)			
	이용자수(명)			
	근로자수(명)			
	준공년도(년)			
개선 의지	공기질 담당자 배정 및 업무분장	있음		
		없음		
총 합계				

〈(방법2) 네이버 폼 QR 코드 및 URL을 통하여 제출〉

○ QR코드 활용



○ URL 활용(<https://m.site.naver.com/1CPuL>)

- 네이버 로그인을 통해 참여, 설문 참여 후 참여 여부 확인 및 답변 수정 가능

 **폼**

내 설문

참여한 설문

전체 1

진행 중

2025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신청서(환경부)

2025. 2. 28. 오전 9:34 ~ 종료 시간 없음

로그아웃

공지사항

이용약관

고객센터

네이버(주) 사업자 정보

대표이사

최수연

전화번호

1588-3820

주소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
NAVER 1784, 13561

이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작권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,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
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NAVER

 **폼**


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답변 수정 >

이 설문은 네이버 폼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고객센터

NAVER 폼

III

O

<

□ 배경 및 목적

-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구축·운영으로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 및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정책 수립 지원

□ 측정장비 설치개요

- 측정장비 : 초미세먼지(PM-2.5), 이산화탄소(CO₂) 등
 - ※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1의2(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·관리기준) 항목
- 소요 전력 : 장비, 에어컨 등 약 2,500W
 - ※ 모자분리(한전계량기 설치 공단납부)를 원칙으로 하며, 불가 시 사용량 요금 지원
- 필요면적 : 작업공간 포함 약 3m² 필요, 현장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- 측정기기 설치 위치 ※ 설치사례 [덧붙임 1] 참조

▶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측정 자료는 공기질 개선 및 환경부 정책자료로 활용되며, 초과하여도 과태료 등 기타 불이익 없음

□ 협조사항

- 측정장비 설치·운영을 위한 적정 지점 제공
 - 24시간 실시간 측정장비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소음 문제를 최소화 지점으로 설치하며, 관련 모든 비용은 한국환경공단 부담
-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도관리 수행 시 업무 협조(월 2회)

□ 향후계획

- 신규 측정망 설치 대상 공모 및 지점 선정('25년 상반기)
- 측정장비 설치 및 시험가동('25년 하반기)
- 정상운영('26.1월~)
 - ※ 자동측정망 설치 완료 후 자가측정 면제 신청 공문 발송(공단→각 지자체)

덧붙임 1 자동측정망 설치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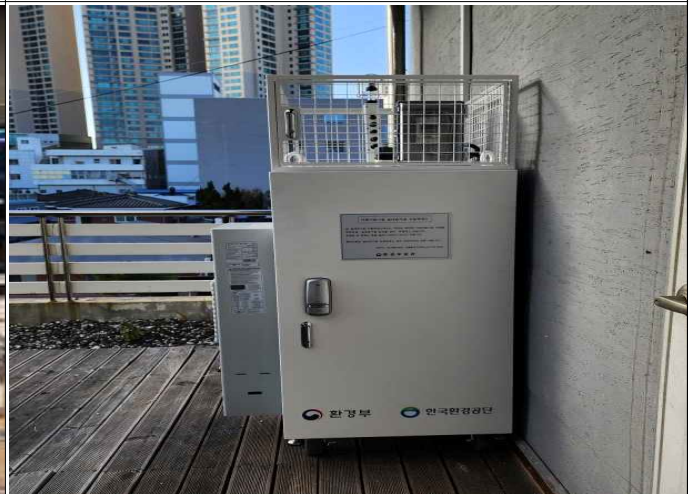
대상시설

설치 예시(사진)



▲ 병원시설 1(로비, 대기공간)

▲ 병원시설 2(로비, 대기공간)



▲ 산후조리원 1(로비)

▲ 산후조리원 2



▲ 어린이놀이시설 1(놀이공간)

▲ 어린이놀이시설 2(놀이공간)

□ 자동측정장비 설치 시 면제사항

○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교육 의무면제(유지 및 권고기준)

- 실내공기질의 측정 면제(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)

제12조(실내공기질의 측정)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

-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(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)

제7조(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)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

○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및 운영매뉴얼

5. 측정기기 설치 위치 선정(가. 측정위치 결정)

- 1) 대상시설의 측정지점은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,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(대상시설 내 실내공기질이 현저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)에는 측정지점을 추가 할 수 있다.
- 2) 측정위치 선정 조건으로는 동선을 파악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 또는 시설의 중심으로 결정한다.
- 3) 측정 시 흡·배기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오염 배출원과 멀리 떨어진 곳(최소한 1m 이상)에서 채취하며, 다수의 흡·배기구가 존재할 경우는 인접한 환기구 설치지점의 중간지점을 채취지점으로 한다.